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 제2026-14호**

개선권고 재결

2026년 1월 2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6-14호(개선권고 재결공고[중앙해심 제2026-001호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

사 건 명 :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

피요청자 : 전**(****. *. ***)

프** ***-****(*****) ***** ***** ***** ****

귀하가 경사시험에 입회하여 검사했던 여객선 세월호가 2014. 04. 16. 10:17경 전라남도 진도군 병풍도 등대에서 006도 방향 약 4.0해리 해상에서 전복·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건 사고는 선사와 선원의 안전관리 소홀로, 기준에 못 미치는 복원력을 가진 세월호가 승인받은 기준 이상의 화물을 적재하고 부실하게 화물을 고박한 채 항해하던 중 변침 과정에서 선회에 의한 경사우력정보보다 작은 복원정으로 인해 급경사가 발생하였고, 이어서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경사와 선회가 가중되며 해수가 유입되면서 전복·침몰한 것으로, 사고 후 대규모 인명피해는 선원들의 적극적인 구호조치가 없었음이 일인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선박이 외국에서 도입되어 증·개축되는 과정에서 경사시험 준비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는 선박을 대상으로 정확하지 않은 조건과 절차 속에서 경사시험을 실시하였고, 그 시험의 결과는 이후 확인된 이 선박의 실체와 차이가 있었음이 심판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비록 이러한 시험의 결과가 이 건 사고의 발생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나, 경사시험 과정에서 검사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향후 선박의 안전과 관련된 경사시험과 선박검사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유사사고의 방지와 선박안전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서, 향후 선박검사와 경사시험의 과정에서 관련 조건과 절차를 정확히 준수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할 것을 권고 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건 명 :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

피요청자 : 이**(****. *. **.*)

부***** ** ***** **, ***** (***) **, *****)

귀하가 승인을 위해 검토한 복원성계산서의 여객선 세월호가 2014. 04. 16. 10:17경 전라남도 진도군 병풍도 등대에서 006도 방향 약 4.0해리 해상에서 전복·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건 사고는 선사와 선원의 안전관리 소홀로, 기준에 못 미치는 복원력을 가진 세월호가 승인받은 기준 이상의 화물을 적재하고 부실하게 화물을 고박한 채 항해하던 중 변침 과정에서 선회에 의한 경사우력정보보다 작은 복원정으로 인해 급경사가 발생하였고, 이어서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경사와 선회가 가중되며 해수가 유입되면서 전복·침몰한 것으로, 사고 후 대규모 인명피해는 선원들의 적극적인 구호조치가 없었음이 일인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귀하가 위 계산서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과정에서 주의를 소홀히 하여, 흘수 보정 오류로 적은 배수량에 근거한 경사시험이 이뤄져 그 결과의 오류가 동 계산서에 포함되었고, 화물적재 조건별 평형수 양을 정함에 있어 선체 균형에 사용될 탱크에 0% 또는 100%로 지정하여 현실성 없는 조건이 포함되었음이 심판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귀하가 이 선박의 화물적재 상태에서 대부분의 평형수탱크를 100%로 채워야 하는 조건을 중요한 정보로 식별하여 이를 선사와 선장이 반드시 시행하도록 강조하여 전하지 못한 것이, 선원들이 이 선박의 복원성에 대한 이해와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된 이유의 하나가 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비록 승인된 위 계산서의 결과가 복원성 기준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고 이 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볼 수 없으나, 선박 운항 중 필수 조건을 명확히 식별하여 강조하는 등 복원성계산서에 대한 선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나아가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건 명 :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

피요청자 : (주)신***** (***)

부***** ** ***** **-, ** (**, ***)

귀사가 작성한 복원성계산서와 차량 및 화물 고박 배치도의 여객선 세월호가 2014. 04. 16. 10:17경 전라남도 진도군 병풍도 등대에서 006도 방향 약 4.0해리 해상에서 전복·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건 사고는 선사와 선원의 안전관리 소홀로, 기준에 못 미치는 복원력을 가진 세월호가 승인받은 기준 이상의 화물을 적재하고 부실하게 화물을 고박한 채 항해하던 중 변침 과정에서 선회에 의한 경사우력정보보다 작은 복원정으로 인해 급경사가 발생하였고, 이어서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경사와 선회가 가중되며 해수가 유입되면서 전복·침몰한 것으로, 사고 후 대규모 인명피해는 선원들의 적극적인 구호조치가 없었음이 일인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귀사가 선박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요구사항과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하고 작성한 결과를 선사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차량 및 화물 고박 배치도’에 일부 부정확한 도면이 포함되는 등 주의를 소홀히 한 부분이 심판의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선박의 안전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는 전문업체로서, 이전 상태보다 안전이 저해되고 안전기준을 준수하기 더 어려워진 상태를 인지하고 이를 선사에 중요 정보로 명확히 전달하지 않은 것은, 비록 이 건 사고의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향후 선사와 선원들의 복원성에 대한 이해와 경각심을 높이고 나아가 이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산과 도면작성의 과정에 정확성을 높이고 안전상태가 변하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정보는 명확히 식별하여 선사를 통해 선원에게 강조하여 전달될 수 있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사에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